

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(제21조제1항 관련)

구분	검정별	기 준
관리위원	필기시험 및 실 기시험(주관식 필기 시험 형태로 한정하 다)	1. 4개 시험실당 1명 이상 2. 시험장별로 3명 이상
	실기시험	1. 종목당 1명 이상 2. 시험장별로 3명 이상
시험감독위원	필기시험 및 실 기시험(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)	시험실 당 1명 이상
	작업형 실기시험	종목별 시험실 당 2명 이상

※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 종목 중 시험결과물(작품)에 대한 채점을 시험 종료 후에 별
도의 장소에서 채점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는 종목은 시험감독위원 2명 중 1
명은 관리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.

※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 종목 중 시험결과물(작품)에 대한 채점을 해당 시험이
시행되는 현장에서 채점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점위원을 2명
이상 위촉한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.